

第 2 分科討論要旨

金 哲 洙*

第 2 分科에서는 徐元宇教授(서울大)의 「環境公害에 관한 法的規制」라는 題目의 發表가 있었고 이어서 金安濟교수(서울大學校 環境大學院)와 金亨徹局長(環境廳)의 指名討論과 그 밖의 교수들의 自由討論이 있었다.

徐教授는 먼저 環境問題에 接近하는 方法을 巨視的 方法과 微規的 方法으로 나누고, 나아가 經濟的·行政的·法的 側面에 대한 接近方法으로 나눈 後 그의 論述이 巨視的 方法 및 法的 側面 그중에서도 私法的 側面이 아닌 公法的 側面에서의 接近方法이라는 것을 밝혔다.

徐教授는 公害規制의 沿革에 대하여 言及한 뒤 環境問題에 있어서는 國家와 國民의 二元性을 前提로 하여 國家가 國民을 規制한다는 종래의 行政法的 基本的인 態度보다, 積極國家·福利國家에로의 변모경향에 따라 國家와 國民의 一元化의 견지에서 調整者·管理者라는 第三者의 立場에서 調整하고 Control하는 것이 더 妥當하다는 結論을 내리고 1977년에 制定된 環境保全法의 內容에 대하여 批判을 가하였는바 基本的으로 環境保全法이 종래의 衛生法的·警察法的 規制에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 및 그것이 公害對策·公害法 내지 環境의 保全이라는 巨視的·積極的 方向 즉 管理法의 方向으로 나아가야 되겠음을指摘하였다. 또한 具體的인 問題點으로서 環境基準의 문제, 綜合的인 規制의 必要性, 履行確保手段의 強化에 있어서의 具體的 問題點, 國家와 地方自治團體간의 責任과 權限의 分配問題, 規制對象의 多樣化, 行政의 怠慢에 대한 措置들이 事實上 不可能하다는 점, 規制措置 請求權의 문제 및 住民參與原則의 確立 문제등을 言及하였고, 그와 關聯하여 環境影響評價의 問題點을 提示하였다.

이어서 金安濟教授와 金亨徹局長의 指名討論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몇가지 反論과 問題點이 제기되었다.

金安濟教授는 發表者의 接近方法이나 理念에 原則적으로 同感하면서도 環境規制法에서 環境管理法으로 나가는 側面的 強度를 結局은 어느것이냐 ‘人間의 行爲’에 대한 規制에 歸結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問題點을 제시하고, 그다음 規制를 環境汚染防止施設命令·汚染物質의 排水水準規制와 같은 直接的規制와, 環境使用料·環境稅와 같은 間接的 規制로 나누면서 發表者가 環境使用料·環境稅의 性格을 受益者負擔金이라고 한 것에 대해, 現在 우리나라의 金益者負擔金이라는 것은 國家가 公益을 爲한 投資나 施設을 했을 때 그것에 의해

* 第 2 分科討論 司會者,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教授.

다른 사람보다 特別히 惠澤을 많이 받은 사람들에게 賦課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런 意味에서 본다면 環境使用料나 環境稅를 受益者負擔金이 아니라 「公共自由財의 侵害에 대한 罰課金」으로 把握해야 한다는 反論을 提起하고, 環境使用料나 環境稅에 따르는 技術的 問題點을 指摘하였다. 公害排出水準에 대하여서도 그 基準이 可能과 理想과의 妥協點에서 만들어져야 하는데 우리 環境保全法이 너무 理想的인 것으로 치우쳐서 結局 企業과 公務員이 法과 現實 사이에서 苦悶하게 되는 問題點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結論으로서 金安濟教授는 理想과 現實의 妥協點에서 政府나 學者들이 環境法에서 다뤄야 할 顧慮變數 내지 制約變數를 提示했는데, 그것은 첫째 環境保全措置를 爲한 行政能力, 둘째 國民個人·企業이나 國家등의 財政水準 및 經濟水準, 셋째 公害를 監視하는 意識·判斷能力·告發하는 勇敢性 등의 國民의 意識水準, 넷째 環境保全法 所定の 公害防止施設을 따라갈 수 있는 技術水準의 完備問題와 마지막으로 開發技法의 水準의 問題 등이었다.

金亨徹局長은 徐元宇教授의 發表와 金安濟教授의 討論을 中心으로 同調하는 것과 異見을 達했는데, 먼저 發表者가 衛生法과 保全法의 沿革을 고찰하면서 環境保全法 第1條에서 國民의 保健을 爲하여 環境汚染을 規制한다고 表現한 것을 衛生法的 측면으로 치우친 것이므로 環境保全 내지 管理로 나아가야 되겠다고 主張한 데 대해, 同條의 文脈은 다소 그렇지만 環境保全法 全體를 살펴보면 環境影響評價制度나 第43條 以下の 費用負擔에 관한 規定, 대기나 수질오염의 含有基準에 관한 規定 및 特別對策地域에 관한 規定 등은 保全法的 側面을 가지고 있다고 反對의 見解를 表示했고 金安濟教授가 環境保全法이 너무 理想的인 데로 치우쳤다고 批判을 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環境保全法의 規定들이 將來의 目標을 設定하고 政府나 國民이 모든 手段을 강구하여 그 目標을 達成하겠다는 不斷한 意志의 表現이라고 辯護의 立場에서 말하였다. 또한 金局長은 防止施設의 技術水準問題와 履行確保手段으로서의 行政代執行 問題에 대해 言及하면서 施設이나 技術水準보다는 施工者나 運營者들의 마음가짐이 가장 重要한 問題가 된다는 意見을 피력하였다.

自由討論으로 具然昌教授는 지금의 環境保全法이 잘 整備되어 있지만 다만 企業의 姿勢나 能力이 問題될 것이라고 하여 金형철局長과 같은 問題點을 指摘했고, 千柄泰教授는 信託理論에 立脚하여 環境權과 環境保全法의 問題解決에 接近하는 方法論을 提示했다.

끝으로 徐元宇教授의 答辯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徐教授는 우리나라에서 環境訴訟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批判하고 그것을 行政訴訟으로 다루어야 할 必要性和 이를 위한 理論的·制度的 整備의 必要성을 力說하고, 環境保全은 國家安保의 見地에서도 必須不可缺하다는 것을 強調하였다.

以外에도 여러가지 많은 問題點들이 論議되었지만 그 內容의 主流은 새로 實施되는 環境保全法이 어떻게 現實狀況 속에서 그 實效성을 제대로 發揮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것이 라고 集約할 수 있을 것이다